

조례 제 호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"별표1"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경제과 소관 "제6호" 다음에 "제7호"를

별지와 같이 신설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